

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4 월 18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1867호

붙임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

**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**

**여수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
관한 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여수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“건강”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·사회적·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
- 2.“건강증진”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(생활습관과 사회, 경제, 환경 등을 말한다)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3.“건강도시”란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.
- 4.“생활터”란 학교, 사업장, 시장, 의료기관, 종교기관,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
 2. 여수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
 3. 국내·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 4.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5.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활동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
3.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
4.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
5. 생애주기별,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제6조(목표를 위한 역할)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시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
2.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
3.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4.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
5.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

6. 지역의 사회적·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는 도시발전 전략추진

제7조(주민의 참여)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, 집행,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민 건강의 날 지정)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세계 비만예방의 날」인 3월 4일을 『여수 시민 건강의 날』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9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, 세부계획수립 시행
2.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4.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

제10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협의회장(이하 “부회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위원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총무과장, 보건행정과장,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, 위촉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역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

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장의 임무등)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의견청취등)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협의·의결사항의 처리)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협의회의 사무처리등)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8조(수당등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